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분석

김 지 경*·송 현 주**

본 연구에서는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소득이전의 성격과 동기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한국노동패널 1차~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 404명을 대상으로 소득이전유무와 이전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과 토빗모형(T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 중 부모와의 소득이전이 있는 비율은 절반을 넘는 수준(58.4%)이며,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가 아들이고, 자녀가 있는 분가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하여 사적소득이전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소득의 금액이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이전소득의 금액보다 2.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보다 더 큰 수혜액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총액에는 자녀의 성별(남자+), 자녀가구의 자녀유무(유+)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소득금액에는 자녀의 성별(남자+), 자녀와 부모와의 왕래정도(자주+), 자녀와 부모의 동일지역 거주여부(동일-)가 영향을 미치며,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받는 소득금액에는 자녀의 성별(남자+), 자녀가구의 자녀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소득이전유형에 따라 이전량을 결정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생계비 조달경로를 살펴보면, 자녀를 비롯한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노인의 비율이 34.1%(통계청DB, 2007)로, 여전히 상당수의 노인에게 사적소득이전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주된 소득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적이전소득을 노후소득원으로서 보유하는 노인의 비율은 2002년 40.1%→2005년 36.2%→2007년 34.1%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2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이전소득의 규모는 2003년 10.0%에서 2006년 12.7%로 증가하고 있어(통계청DB, 2007), 소득을 이전하는 동기와 행태 그리고 ‘이전자’와 ‘수혜자’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노인 및 노인가구로 대표되었던 부모세대가 사적소득이전의 수혜대상이 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사적소득이전의 ‘제공자’ 또는 ‘지원자’의 역할을 하였던 자녀세대가 오히려 수혜자가 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최근 ‘캥거루족’이라는 신조어의 등장은 이 같은 변화의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인하대학교 소비자동행학과 박사과정,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

할 수 있다. 썩어죽은 취직할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살거나, 취직이나 결혼을 하였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 세대를 말한다(두산동아백과사전). 이러한 썩어죽이 증가는 우리나라 청년층 취업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의 평균치(43%)에 크게 못 미치는 27%(연합뉴스, 2007년 12월 23일자)이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 같은 자녀세대의 불안정한 경제적 여건이 세대 간 소득이전에 있어,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소득이전의 감소와 부모로부터 받는 소득이전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부모와 자녀의 사적소득 이전은 단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또는 부양이라는 목적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기도 하는 동시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렇게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중요한 소득원천이 될 수 있다(김지경·송은경, 2004).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소득이전의 동기는 무엇인가?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 간 소득이전의 성격과 소득이전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선행연구(손병돈, 1998, 1999; Altonji, Hayashi & Kotlikoff, 1997; Bernheim, Shleifer & Summers, 1985; Cox, 1987; Cox & Rank, 1992; Dunn, 1994; Lee, Parish & Willis, 1994; McGarry & Schoeni, 1995, 1997; Menchik, 1980; Secondi, 1997; Shi, 1993; Tomes, 1981; Wilhelm, 1996)에서 분석되었으나, 다수의 연구가 사적이전소득이 교환동기이론(exchange motive theory)과 이타주의 이론(altruism theory)을 검증하는 서구의 연구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간의 소득이전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동기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소수이다. 최근 들어 소수의 연구(김지경·송은경, 2004; 김지연, 2007; 박미려, 2007; 손병돈, 1998, 1999)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상이한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소득이전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은 서구의 교환동기이론이나 이타주의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가족문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간의 소득이전 행태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며, 어떠한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적이전소득의 성격과 그 동기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및 가계의 자원배분과 관련된 이론 및 이슈들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제공되고, 노후소득과 관련된 연구 및 관련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관련 이론

사적소득이전이란 자녀나 친인척 등 비공식 지지망의 생존자가 다른 사람에게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Cox & Raines, 1985). 주고받는 행위가 생존자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산(bequest)과 차이가 있고, 재산형태보다는 현금 또는 현물 등의 형태로, 목돈형태보다는 일상적인 현금거래가 주가 된다는 점에서 증여(gift)와 구별된다(손병돈, 1998).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은 세대 간 사적소득이전의 전형적인 형태이며(Gusio & Jappelli, 1991), 특히 부모와 기혼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손병돈, 1998). 사적소득이전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복지(well-being)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의 재분배 정책의 효과에 있어 잠재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Schoeni, 1997).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은 교환동기이론(exchange motive theory), 이타주의 이론(altruism theory), 효 이론 그리고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로 설명된다. 교환동기이론에서는 소득이전의 동기가 현재 내지 미래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Bernheim, Shieifer & Summers, 1985; Cox & Rank, 1992; Lucas & Stark, 1985; Shi, 1993)라고 설명한다. 즉 부모로부터 보다 많은 상속을 받으려는 기대나 부모가 제공하는 아이돌보기, 집 봐주기, 가사일 등과 같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소득이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또 다른 설명은 부모가 자녀가 경제력을 가질 때까지 자녀의 교육이나 사업 등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제공하는데, 이는 부모가 늙었을 때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Lee, Paris & Willis, 1994).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소득 역시 부모가 자신에게 투자한 교육이나 대여해 준 소득에 대한 “갚음”의 성격을 갖는다는 설명이다(Shi, 1993). 이와 같은 설명에 의하면, 자녀에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부모일수록 자녀로부터 소득이전을 많이 수혜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투자량은 자신의 경제력에 일정 정도 비례하는 경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재정투자를 많이 한 상위계층부모에게 많이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교환동기이론에 근거할 경우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소득이전의 양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타주의 이론에서는 부모나 자녀가 소득상실이나 소득감소가 있을 때,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개별 가구가 아닌, 전체 부모와 자녀가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것(Becker, 1974; Becker & Tomes, 1979; Altonji, Hayashi & Kotlikof, 1997; 강성진, 2005; 강성진·전형준, 2005)을 세대 간 소득이전의 동기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소득이전의 혜택은 소득이 적을수록 소득이전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세대 간 소득이전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기제가 된다(Dunn, 1994).

최근 수행되어진 국내의 사적소득이전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부모와 자녀 간 소득이전의 동기가 교환이론보다는 이타주의이론으로 설명된다고 하는 실증분석의 결과들(손병돈, 1998; 강성진·전병준, 2005; 성재민, 2006; 김희삼, 2007)이 있다. 특히 김희삼(2007)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사적이전의 동기로 이타주의가 지배적이며, 사적이전의 동기가 교환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금전적인 교환이 아닌 주로 노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설명 이외에 또 다른 설명은 부모와 자녀간의 소득이전이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화된 계약 없이 이루어지는 보험이라는 것이다(Kotlikof & Spivak, 1981). 즉 젊은 세대들이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제도보다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소득이전을 통해서 소비안정화를 기한다는 것이다(Gusio & Jappelli, 1991).

“효”문화에 따라 세대 간 소득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설명도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교환이론이나 이타주의 보다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도리’나 ‘효’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주된 동기라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효의 방법 중 하나가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봉양이므로 부모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은 부모에 대한 물질적인 봉양을 의미한다(진재문, 1999). 또한 효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복종하고, 존경하고, 봉양해야 하는 윤리적 실천적 의무이기 때문에, 효에 의해 소득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가족 간 소득이전은 부모의 소득, 재산 등의 경제력 정도와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Lee, Netzer & Coward, 1994; Lee, Paris & Willis, 1994). 손병돈(1999)의 연구를 비롯한 국내의 최근 연구들(Kim & Song, 2006; 박미려, 2007)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결과들을 보여,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소득이전 동기를 ‘효’라고 결론내리기도 하였다.

사적소득이전의 동기를 설명하는 또 다른 설명은 전시효과(demonstration-effect)이다. 전시효과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개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http://en.wikipedia.org/wiki/Demonstration_effect)을 말하는데, Cox와 Stark(1995)은 부모가 조부모에게 관심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에게 그런 행동을 관찰하게 함으로서 미래에 자신의 자녀로부터 자신이 지원받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전시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조부모 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손자녀의 존재와 특성이다. 손자녀의 존재는 부모가 조부모에게 이전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시효과에 근거할 경우,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가구에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에게 소득이전을 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2. 관련 요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사적소득이전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이전을 제공하는 ‘이전자’ 관련요인과 이전을 받는 ‘수혜자’와 관련된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전자의 관련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가족원수, 형제 수, 첫째 자녀여부, 취업여부, 혼인상태, 소득 등이며, 수혜자의 요인으로는 자산 또는 소득, 이전자에 대한 용역서비스의 제공여부, 자녀에 대한 투자수준, 건강상태, 연령, 학력, 가구형태, 거주지역, 퇴직여부, 부모의 애경사 유무 등이다(Stoller, 1985; Hauser & Fisher, 1990; Logan & Spitze, 1994; 손병돈, 1998, 1999; 임정민, 2000; 김지경·송은경, 2004; 김지연, 2006; Kim &

Song, 2006; 김희삼, 2007; 박미려, 2007; Kim, 2007).

성별과 가족원수는 선행연구들에서 분석방법에 관계없이 사적이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강성진, 2005; 김지연, 2006; 임정민, 2000; Kim 2007). Secondi(1997), McGarry와 Schoeni(1995)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 부모의 성별이 어머니일 때 소득이전의 가능성과 이전금액이 모두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Cox(1987)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족원수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녀수나 부양해야 하는 부모 등의 동거가족이 많을 경우 소득을 이전할 가능성은 낮으나, 이전받는 소득의 양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박미려, 2007; Kim, 2007). 첫째자녀 여부가 소득이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손병돈, 1998, 1999; 김지연, 2006; Kim, 2007)도 있다. 즉 장남이나 장녀일수록 소득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량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연령과 가계소득 및 자산과 같은 변수들은 각 연구마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연령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 결과(Cox, 1987; McGarry & Schoeni, 1995, 1997; Secondi, 1997; 진재문, 1999)에서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나, McGarry와 Schoeni(1995)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였다. 특히 Secondi(1997)의 연구에서는 자녀에서 부모로의 소득이전은 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연구에 비해 더욱 많은 이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국지역문화의 특성상 부모가 손자녀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전을 받는 것으로 짐작된다.

학력은 대부분 모든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 소득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Cox, 1987; McGarry & Schoeni, 1995, 1997; 손병돈, 1998; 진재문, 1999; 강성진, 2005; 고선강, 2005; 김지연, 2006; Kim, 2007). 교환주의 이론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전량이 많은데,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들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소득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액도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취업여부는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소득이전을 더 많이 하고, 미취업자는 자원을 더 많이 수혜받는 부적의 관계를 보였다(손병돈, 1998; 임정민, 2000; 김지경·송은경, 2004; 강성진, 2005; 고선강, 2005; 김지연, 2006; Kim, 2007). 취업여부는 소득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득변수는 소득이전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이전의 방향과 관계없이, 이전자의 입장에서는 소득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즉 이전자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이전량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소득이전의 동기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즉 수혜자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이타주의적 입장에서는 이전량이 감소하게 되며(Tomes, 1981; 손병돈, 1988; Dunn, 1994; McGarry & Schoeni, 1995, 1997), 교환주의적 관점에서는 수혜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Cox, 1987; Cox & Rank, 1992; Secondi, 1997).

이들 변수와 더불어 부모의 건강상태나 자녀와의 근접성 여부, 부모의 생존형태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진재문(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건강상태와 이전규모가 정(+)의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에게 더욱 이전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이전 받을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손병돈(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와 자녀의 근접성은 접촉 용이성과 연락빈도 등을 통해 측정되는데,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근접성은 자원이전규모와 정(+)의 관계를 지니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일상적 접촉이 높을수록 자원이전 또한 높다고 밝혀졌다(손병돈, 1998; McGarry & Schoeni, 1995, 1997; Altongji, Hayashi & Kotlikoff, 1997; 김지연, 2006; Kim, 2007). 부모와 자녀의 거주지역이 동일할 경우 부모와의 접촉이 용이할 것이며 접촉빈도 또한 높다. 부모와 자녀의 거주 거리도 소득이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Lee, Netzer와 Coward(1994)는 부모와 자녀간의 소득이전에 있어서 수혜와 이전의 모든 경우에 거리변수는 영향을 줄이므로 부모와 자녀가 가까이 살수록 수혜와 제공의 액수가 많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의 생존형태는 많은 연구들에서 자녀들이 노인 부부가구보다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 사는 가구에 소득이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손병돈, 1998; Lee, Parish & Willis, 1994; Cox & Jakuson, 1995).

III. 연구방법

1. 자료와 표본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라 함) 1차년도(1998년)부터 9차년도(2006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1998년 구축된 원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2차년도(1999년)부터 9차년도(2006)까지 8년 동안 매 년도자료에서 포착된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들과 그들이 속한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부모님과 분가하기 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원가구를 부모가구로 연결시켜 분석자료에 포함하였다.

KLIPS에서는 4차년도(2001년)부터 가구주 및 배우자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여부와 교류금액을 측정하고 있다. 즉 가구주와 배우자에게 따로 사는 부모님의 유무를 각각 묻고, 지난 1년 동안 따로 사는 부모님에게 제공한 이전소득과 부모님으로부터 수혜 받은 소득이전금액을 현금과 현물의 총액으로 측정한다. 또한 KLIPS에서는 매년 원가구에서 분가한 가구원을 추적조사하고 분가사유를 파악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간의 소득이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분가사유 중 '결혼'으로 분가한 가구만을 추출하였다. 이때 결혼의 사유로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가구원의 분가, 예컨대 형제관계였던 분가가구원들은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부모-자녀관계에 있다가 결혼으로 분가한 가구원만을 선택하였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 결혼으로 분가한 가구는 총 911가구이며, 이는 매해 KLIPS에 응답하는 가구 중 2%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구들이 부모가구에서 결혼을 통해 분가하는 가구였다. 결혼으로 분가한 총 911가구 중 9차년도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한 404가구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해에 걸쳐 조사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실제 패널자료에서 포착된 결혼하여 독립한 성인자녀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소득을 비롯한 자녀 또는 부모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해온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자료는 자녀가구에 대한 정보와 부모가구에 대한 정보가 모두 각각의 응답자들이 실제로 응답한 자료가 되므로, 분석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한국에서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의 사적소득이전을 이해하는데 임의가정이나 오류를 수반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구축된 패널자료의 한계와 분가가구원의 추적조사의 어려움으로 결혼으로 인한 분가 자녀 중 과반수를 넘는 무응답으로 인하여 최종 분석대상자로 추출할 수 있는 표본수가 적어 다양한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제한이 있음을 밝힌다.

<표 1> 년도별 분가가구 분포

	응답가구수	결혼으로 분가한 가구		9차(2006년)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	최종 표본
		가구수	응답가구 중 비중		
1차(1998년)	5000	-			
2차(1999년)	4508	134	2.97	78	56
3차(2000년)	4266	96	2.26	67	29
4차(2001년)	4248	116	2.73	67	49
5차(2002년)	4298	110	2.56	67	43
6차(2003년)	4592	108	2.53	69	39
7차(2004년)	4762	122	2.56	42	80
8차(2005년)	4850	115	2.37	48	67
9차(2006년)	5502	110	2.00	69	41
계		911		507	404

2. 분석방법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을 설명하는 이론과 선행연구에서의 결과 그리고 표본수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의 개인특성으로는 분가자녀의 성별, 학력, 첫 자녀(장남, 장녀)여부, 취업형태를, 자녀가구의 특성으로는 가구 내 자녀유무, 자녀가구의 월소득, 부모와의 왕래정도, 그리고 부모가구의 특성으로는 생존부모, 자녀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 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선정하였다. 분가 후 경과년수는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1차부터 9차까지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들이 분가하여 경과한 시간 따라 부모와의 소득이전의 가능성과 이전량이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분석변수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자의 특성을 사적소득이전의 유무를 기준으로 나누어 χ^2 -test와 t-test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사적소득이전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

는 이항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여,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 소득이전 유무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적소득이전량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사적소득이전액과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소득이전액의 통계적인 차이를 t-test와 GLM-test를 통해 분석하고 scheffe-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소득이전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이전 유형(①자녀→부모, ②자녀←부모)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모델은 소득이전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이전을 하지 않는 가구를 '0'에서 left censoring된 자료로 간주하여 포함시키는 토빗모델(Tobit Model)을 이용하였다.

이항로짓모델과 토빗모델에서의 독립변수는 자녀의 성별(남자:1, 여자:0)과 첫 자녀 여부(첫자녀:0, 그 외:0), 취업여부(취업:1, 미취업:0),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 가구의 자녀유무(유:1, 무:0), 생존 부모(양부모:1, 한 부모:0), 부모와의 왕래정도(자주:1, 그 외:0), 자녀와 동일지역 거주여부(동일:1, 비동일:0)는 가변수(dummy variables) 처리하였다. 자녀의 학력은 교육년수로 환산하였고, 자녀가 구 월소득, 자녀의 분가후 경과년수, 부모가구의 월소득은 연속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SPSS 13.0과 STATA 10.0으로 분석되었다.

〈표 2〉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변수값	
독립변수	가변수	성별	남자: 1 여자: 0
		첫 자녀 여부	첫 자녀: 1 그 외: 0
		취업여부	취업자: 1 미취업: 0
		자녀 유무	유: 1 무: 0
		생존 부모	양부모: 1 한부모: 0
		부모와의 왕래정도	자주: 1 그 외: 0
		자녀와 동일지역 거주 여부	동일: 1 비동일: 0
	연속변수	학력	교육년수
		자녀가구 월소득	자녀가구 월평균 소득의 자연로그값
		분가 후 경과년수	2006년-분가년도
종속변수	가변수	사적소득이전 유무	유: 1 무: 0
		연속변수	사적소득이전액

IV. 분석결과

1. 소득이전유무에 따른 분석대상의 특성

<표3>은 분석대상가구인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가구와 그들의 부모가구를 소득이전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404가구 중 절반이 넘는 236가구(58.4%)가 부모와의 소득이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의 성별, 취업형태, 자녀유무, 부모와의 왕래정도의 특성이 소득이전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선 분가 자녀의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가 아들인 경우 80.8%가 부모와의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나, 딸인 경우는 아들의 약 절반수준인 42.6%만이 부모와의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자녀 간의 소득이전행태에 있어 자녀성별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의 취업형태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보면, 자녀가 임금근로자로 취업했거나(67.6%) 비임금근로자로 소득활동을 하는 자녀(71.1%)가 비취업상태에 있는 자녀(59.6%)에 비해 부모와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으며, 임금근로자보다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다소(3.5%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의 가구특성에서는 자녀를 둔 가구의 62.8%가 자녀가 소득이전을 받거나 부모에게 소득이전을 제공하는 반면, 자녀가 없는 가구의 37.2%만이 소득이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대상자의 결혼으로 분가한 이후 경과년수가 3.28년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자녀의 연령은 매우 낮을 것이며, 어린 자녀의 유무는 부모와 조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소득이전에 중요한 매개체가 됨을 짐작할 수 있다. 부모와의 왕래정도는 자주 찾아뵙는 경우 60.9%가 소득이전이 있으나, 가끔 찾아뵙는 경우는 45.5%만이 소득이전이 있다고 응답하여, 부모님 방문빈도와 소득이전유무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사적소득이전유무에 따른 분석대상자의 특성

(N=404)

구분	특성	범주	이전유무사		χ ² /t-test	
			레수(%)	있음		
전 체			404 (100.0)	236 (58.4)	168 (41.6)	
			404 (100.0)	236 (100.0)	168 (100.0)	
분가 자녀 개인 특성	성별	남자	167 (100.0)	135 (80.8)	32 (19.2)	58.919***
		여자	237 (100.0)	101 (42.6)	136 (57.4)	
	학력	고등학교	134 (100.0)	76 (56.7)	58 (43.3)	.276
		전문대	111 (100.0)	65 (58.6)	46 (41.4)	
		4년제 이상	159 (100.0)	95 (59.7)	64 (40.3)	
		평균(년)	14.20 (2.16)	14.31 (2.15)	14.05 (2.16)	
	첫 자녀 여부	첫 자녀(장남,장녀)	146 (100.0)	81 (55.5)	65 (44.5)	.811
		그 외	258 (100.0)	155 (60.1)	103 (39.9)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225 (100.0)	152 (67.6)	73 (32.4)	28.021***
		비임금근로자	38 (100.0)	27 (71.1)	11 (28.9)	
미취업자		141 (100.0)	75 (40.4)	84 (59.6)		
분가 자녀 가구 특성	자녀 유무	있음	290 (100.0)	182 (62.8)	108 (37.2)	7.979**
		없음	114 (100.0)	54 (47.4)	60 (52.6)	
		평균(명)	1.42 (0.53)	1.41 (.53)	1.42 (.53)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13 (100.0)	69 (61.1)	44 (38.9)	.454
		200-300만원 미만	160 (100.0)	92 (57.5)	68 (42.5)	
		300만원 이상	131 (100.0)	75 (53.7)	56 (42.7)	
		평균(만원)	266.12 (161.55)	263.80 (147.68)	269.39 (179.65)	
	분가후 경과년수	0-3년	227 (100.0)	128 (56.4)	99 (43.6)	.877
		4-7년	177 (100.0)	108 (61.0)	69 (39.0)	
		평균(년)	3.28 (2.27)	3.38 (2.21)	3.15 (2.35)	
부모와의 왕래정도	자주 찾아뵈었다	66 (100.0)	206 (60.9)	132 (39.1)	5.456*	
	가끔 찾아뵈었다	338 (100.0)	30 (45.5)	36 (54.5)		
부모 가구 특성	생존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335 (100.0)	194 (57.9)	141 (42.1)	.365 ^a
		아버지	11 (100.0)	7 (63.6)	4 (36.3)	
		어머니	57 (100.0)	35 (61.4)	22 (38.6)	
		무응답	1			
	자녀와 동일지역 거주여부	거주	294 (100.0)	173 (58.8)	121 (41.2)	.081
		비거주	110 (100.0)	63 (57.3)	47 (42.7)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122 (100.0)	73 (59.8)	49 (40.2)	3.201
		100-200만원 미만	117 (100.0)	70 (59.8)	47 (40.2)	
		200-350만원 미만	103 (100.0)	53 (51.5)	50 (48.5)	
		350만원 이상	62 (100.0)	40 (64.5)	22 (35.5)	
평균(만원)		204.43 (217.59)	209.48 (249.86)	197.34 (162.24)		

*p<.05, **p<.01, ***<.001

a.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2. 이전유형에 따른 연평균 소득이전액

자녀가 부모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를 ‘이전제공’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경우를 ‘이전수혜’로 나누어 소득이전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자녀가구와 부모가구의 특성에 따른 연평균 소득이전액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표4>에 제시하였다.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에 소득이전이 있는 236가구 중, 자녀가 부모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가구는 192가구(81.4%)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소득이전을 받는 가구는 150가구(63.5%)로 자녀가 부모에게 소득이전을 하는 이전제공의 유형이 이전수혜의 유형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²⁾

소득이전의 금액에 있어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금액과 부모님으로부터 이전받는 금액의 총합인 총이전액이 연평균 331만8천원 정도이고,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연간 이전하는 소득액은 125만2천원, 자녀가 부모에게서 이전받는 소득액은 361만8천원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전 받는 이전수혜액이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이전제공액의 2.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녀와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의 여부와 이전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각 소득이전 유형별로 자녀가구와 부모가구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유형에 있어서 자녀의 취업형태와 자녀가구의 월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임금근로자인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소득액(연평균 139만4천원)과 비임금근로자인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소득액(160만원)이 비취업자인 자녀(56만3천원)에 비해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자녀가구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소득금액(196만2천원)이 가구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의 자녀가구(77만원)의 2.54배, 가구 월소득이 200~300만원인 자녀가구(97만1천원)의 2.0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소득이전량이 자녀의 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소득이전을 제공하기도 하고 수혜받기도 하는 가구가 106가구(26.2%)를 구성하고 있음.

<표 4> 사적소득이전유형에 따른 연평균 소득이전액

(단위: 만원)

구분	특성	이전유형 범주	이전제공	이전수혜	총이전액
			자녀→부모 N=192 (81.4)	자녀←부모 N=150 (63.6)	
전 체			125.22 ^a (192.42) ^b	361.87 (1742.91)	331.88 (1403.66)
분가 자녀 개인 특성	성별	남자	127.05 (132.35)	499.24 (2306.92)	422.76 (1807.36)
		여자	121.66 (275.66)	196.21 (520.27)	210.40 (476.36)
		t-test	-.149	-1.061	-1.151
	학력	고등학교	115.89 (166.86)	215.57 (665.08)	219.34 (520.00)
		전문대	116.50 (221.83)	352.07 (928.70)	320.69 (797.47)
		4년제 이상	138.46 (192.07)	468.88 (2508.91)	429.56 (2063.24)
	GLM-test	.309	.274	.474	
	첫 자녀 여부	첫 자녀(장남,장녀)	162.55 (267.78)	664.46 (2859.19)	555.00 (2307.57)
		그 외	106.56 (138.06)	201.31 (541.23)	215.28 (447.82)
		t-test	-1.571	-1.157	-1.773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139.42 (213.68) ^b	251.92 (731.76)	276.13 (609.53) ^a
		비임금근로자	160.00 (184.77) ^{ab}	1124.00 (4448.07)	957.04 (3824.36) ^a
미취업자		56.32 (59.05) ^a	226.24 (623.99)	184.40 (506.74) ^b	
GLM-test	3.215 [*]	2.246	3.170 [*]		
분가 자녀 가구 특성	자녀 유무	있음	122.08 (195.91)	375.81 (1933.37)	345.66 (1576.19)
		없음	136.12 (181.59)	308.35 (617.49)	285.41 (498.89)
		t-test	.420	-.191	-.276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77.02 (74.30) ^a	481.81 (1107.46)	351.32 (898.06)
		200-300만원 미만	97.11 (110.41) ^a	100.41 (186.56)	142.47 (176.65)
		300만원 이상	196.23 (289.94) ^b	564.40 (2834.68)	546.33 (2320.75)
	GLM-test	7.312 ^{**}	1.091	1.730	
	분가후 경과년수	0-3년	105.70 (145.41)	366.16 (881.13)	312.70 (720.33)
		4-7년	148.79 (235.86)	357.08 (2366.62)	354.61 (1926.24)
		t-test	-1.486	.032	-.228
	부모와의 왕래정도	자주 찾아뵈었다	129.14 (198.04)	365.17 (1838.50)	338.79 (1480.32)
		가끔 찾아뵈었다	95.00 (141.57)	339.11 (856.40)	284.43 (687.60)
t-test		-.782	-.061	-.198	
부모 가구 특성	생존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117.53 (167.41)	411.65 (1906.59)	359.45 (1537.34)
		아버지	51.67 (34.30)	97.50 (80.16)	100.00 (75.06)
		어머니	186.85 (309.69)	129.32 (420.37)	225.43 (417.32)
	GLM-test	1.970	.290	.232	
	자녀와 동일지역 거주여부	거주	113.07 (164.34)	393.96 (1972.16)	349.79 (1612.04)
		비거주	156.30 (249.49)	260.25 (600.68)	282.68 (505.33)
		t-test	1.403	-.400	-.324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112.54 (117.34)	551.87 (2931.20)	455.52 (2352.42)
		100-200만원 미만	152.41 (258.79)	283.07 (877.40)	295.81 (742.33)
		200-350만원 미만	108.21 (158.46)	290.15 (580.09)	265.75 (486.17)
	350만원 이상	124.16 (219.22)	242.50 (676.70)	256.95 (568.33)	
	GLM-test	.565	.271	.279	
이전 유형	한방향 이전	137.21 (209.17)	380.45 (776.08)	219.54 (492.90)	
	양방향 이전	115.50 (178.10)	354.15 (2015.90)	469.65 (2019.01)	
	t-test	.777	.084	-1.364	

* $p < .05$, ** $p < .01$

a: 연평균 b: 표준편차

3.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소득이전 및 이전액의 결정요인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의 사적소득이전 유무와 이전액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결혼한 자녀와 부모 간에 사적소득이전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녀의 성별과 자녀가구의 자녀유무인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의 선행연구들(임정민, 2000; 강성진, 2005; 김지연, 2006; 박미려, 2007; Kim, 2007)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자녀의 성별 변수의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으로 분가한 성인자녀가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에 비해 부모와 소득이전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결혼한 자녀와 이루어지는 사적소득이전이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들(Lee, Paris & Willis, 1994; Lillard & Willis, 1997; Kim, 2005;)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차이가 있으며, 아들의 경우 그들의 부모에게 소득이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딸의 경우 결혼 후 배우자의 집에 예속되어 자신의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는 상대적으로 단절된 형태를 띠는 가부장적 문화가 현대에도 강하게 남아 있어 부모에게 소득이전보다는 정서적 연계와 병수발 등의 시간자원 및 용역서비스를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다.

한편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의 가구에 어린자녀가 있으면 부모와 소득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결과는,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사건으로 인한 가족의 연계와 손자녀를 위한 조부모의 생활비와 양육비 등의 보조 등 어린자녀로 인한 소득이전의 계기가 증가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구의 전시효과(demonstration-effect)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어린자녀에게 조부모 부양이나 보살핌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노후에 그와 같이 부양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어린자녀의 존재가 자녀와 부모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가족문화를 이어가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간 소득이전 여부의 결정요인

구분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표준오차)
	상 수	-2.02	(1.00)*		
분가자녀 개인특성	성별(남자)	1.60	(0.29)***	4.94	(1.43)
	학력	0.08	(0.06)	1.08	(0.06)
	첫 자녀여부(첫자녀)	-0.29	(0.24)	0.74	(0.18)
	취업형태(임금, 비임금)	0.41	(0.29)	1.41	(0.44)
분가자녀 가구특성	자녀유무(유)	0.93	(0.29)**	2.53	(0.73)
	log자녀가구의 월평균 소득	-0.07	(0.10)	0.93	(0.10)
	분가 후 경과년수	-0.02	(0.06)	0.98	(0.06)
	부모와의 왕래정도(자주)	0.53	(0.32)	1.69	(0.54)
부모관련 가구특성	생존부모	-0.24	(0.30)	0.79	(0.24)
	자녀와 동일지역 거주여부(동일)	-0.10	(0.27)	0.91	(0.24)
	log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	0.03	(0.09)	1.04	(0.09)
N		404			
LR chi2		82.40***			
Pseudo R2		0.150			
Log Likelihood		-233.082			

* $p < .05$, ** $p < .01$, *** $p < .001$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 소득이전액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표6>의 결과를 살펴보면, 총이전금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델과 자녀가 부모에게서 이전 받는 모델에서는 동일하게 자녀의 성별과 자녀유무가 소득이전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의 성별이 아들인 경우 딸에 비해 부모와 소득이전하는 금액이 많으며, 어린자녀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득이전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친가혈연중심의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손자녀가 있는 아들에게 보다 많은 소득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소득액에는 자녀의 성별, 부모와의 왕래정도, 자녀와 부모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소득이전 유무와 부모에게 수혜 받는 이전액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소득액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의 자녀와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소득이전을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와는 달리, 부모와의 왕래정도와 부모가 자녀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이전 유무나 부모에게 수혜 받는 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소득이전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모와의 왕래정도는 정(+)의 영향을 미쳐, 부모와 자주 왕래할수록 부모에게 제공하는 소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속이나 증여와는 달리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의 경우 부모와 자주 만나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부모에게 제공하는 이전소득의 규모가 커짐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가 자녀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지의 여부는 소득금액에 부(-)의 영향을 미쳐 부모가 자녀와 동일지역에 살지 않는 경우, 동일지역에 사는 이들에 비해 자녀로부터 더 많은 소득을 이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주 방문한다 할지라도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부모보다는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부모에게 자녀가 이전하는 소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원거리에 계시는 부모에 대한 걱정과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기인한 결과로 이해된다.

〈표 6〉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간 소득이전액의 결정요인

구분	변수	이전제공	이전수혜	총이전액
		자녀→부모	자녀←부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 수		-367.31 (122.05)**	-3786.09 (1054.55)***	-2196.77 (733.92)**
Scale		223.08 (12.05)	1833.98 (109.20)	1432.91 (67.07)
분가 자녀 개인 특성	성별(남자)	165.10 (33.57)***	686.15 (287.69)*	784.06 (203.82)***
	학력	4.06 (6.39)	109.71 (56.70)	50.04 (39.26)
분가 자녀 가구 특성	첫 자녀여부(첫자녀)	4.18 (27.81)	175.34 (239.80)	167.14 (170.41)
	취업형태(임금, 비임금)	69.88 (38.14)	244.45 (325.76)	151.52 (228.12)
부모 관련 가구 특성	자녀유무(유)	51.52 (33.54)	675.92 (296.49)*	452.92 (204.87)*
	log자녀가구의 월평균 소득	16.72 (12.88)	3.31 (100.76)	72.95 (75.33)
	분가후 경과년수	4.67 (6.54)	-26.06 (56.91)	-23.22 (40.24)
	부모와의 왕래정도(자주)	96.63 (39.98)*	134.83 (336.44)	249.98 (236.83)
부 모 가 구 특 성	생존부모	-45.76 (34.72)	106.27 (303.63)	-8.31 (213.30)
	자녀와 동일지역 거주여부(동일)	-64.92 (30.31)*	301.24 (272.74)	45.16 (188.68)
	log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	-1.30 (9.90)	-58.05 (87.68)	-56.17 (61.19)
N		404	404	404
Left Censored		212	254	168
LR chi2		82.96***	25.84**	42.11***
Pseudo R2		0.029	0.010	0.010
Log Likelihood		-1414.324	-1448.318	-2136.961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 자녀와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소득이전의 유무와 이전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세대 간 소득이전의 동기와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와 정책에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소득이전여부와 사적소득이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설정된 분석모델이 낮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이전소득의 동기나 행태가 이제까지 사적소득이전과 관련하여 논의의 중심이 되어온 국내외 관련 이론이나 객관적으로 측정된 지표들로 파악되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와는 달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이전의 동기는 교환이론이나 이타주의 이론 또는 전시효과 등에서 설명하는 요인들과는 별개의 요인들로 이루어진 메커니즘 속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이들 이론에서 설명

하는 요인들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다른 잠재적인 요인들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이전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이론이 아닌 보다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분석모델의 설명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의 성별은 부모와의 사적이전소득의 유무와 이전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분석되어, 아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이전소득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득이전이 경제적인 여건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딸의 경우 결혼 후 친정부모와의 교류가 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함께 분석된 교육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부모가 생애 아들에 대해 더 많은 투자를 하여 그에 대한 값음의 성격으로 아들로부터 또는 아들에게 소득이전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교환이론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함께 분석된 첫 자녀유무의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의 사적이전소득이 아들을 중심으로 한 “효”이론의 성격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셋째, 이전유형, 즉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가 이전 제공자가 되느냐, 수혜자가 되느냐에 따라 이전량 차이가 2.88배에 이른다는 결과와 어린자녀의 존재변수가 부모에게 받는 소득이전량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소득이전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동기와 자녀가 부모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동기와 그 메커니즘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결혼 후 분가의 경과년수가 평균 3.28년인 분석대상 자녀가구들이 신혼기에서 자녀 출산으로 인한 가구원 수의 증가에 따른 생활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소비지출 증가를 경험했을 것이다. 또한 2007년 현재 결혼 후 주택을 마련하는 데 9.4년이 소요된다(파이낸셜 뉴스, 2007)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분가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기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부모가 소득이전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세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실질적 수혜자는 자녀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소득의 동기는 이타적인 동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문헌

- 강성진(2005), 「사적이전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1-22.
- 강성진·전형준(2005),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관한 연구」, 『공공경제』, 10(1), 23-46.
- 고선강(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7-195.
- 김지경·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따로 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김지연(2006), 「성인자녀와 부모간 경제적 자원교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삼(2007), 「사적소득이전과 노인소득보장」,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자료집, 509-560.
- 두산동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93267>.
- 박미려(2007), 「은퇴노인의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및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재민(2006),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사적이전」, 『월간노동리뷰』, 15, 한국노동연구원, 75-83.
- 손병돈(1998), 「가족 간 소득이전 결정요인의 계층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11, 79-105.
- _____(1999), 「부모 부양의 동기와 재분배 효과: 가족간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19(2), 59-78.
- 연합뉴스(2007), 「한국 청년 취업률 OECD 평균에 크게 미달」, 2007년 12월 23일자.
-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Demonstration_effect.
- 임정민(2000), 「경제위기 전후 사적 소득이전 결정요인 비교 연구-사적 소득이전 수혜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재문(1999),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 분석」, 『사회복지연구』, 13, 167-199.
- 파이낸셜 뉴스(2007.12.27), 「결혼후 '내집 마련' 9.4년 걸려」, 2007년 12월 27일자.
- 통계청.www.nso.go.kr/
- Altonji, J. G., Hayashi, F., & Lasurance Kotlikoff(1997), "Parental Altruism and Inter-vivos Transfer: Theory and Evidenc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6), 1121-1166.
- Becker, G. S.(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 1063-1093.
- Becker, G. S. & Tomes, N.(1979),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6), 1153–1189.
- Bernheim, B. D., Shleifer, A. Summers, L. H.(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1045–1076.
- Cox, D.(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95, 509–546.
- Cox, D. & F. Ranses(1985), *Interfamily Transfers and Income Redistribution–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 Well–Being*, eds. M. David and T. Smeeding. Chicago: NBER a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93–421.
- Cox, D. & G. Jakubson(1995), "The Connection between Public Transfers and Private Interfamily Transfe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7, 129–167.
- Cox, D. & Rank, M.(1992), "Inter–vivos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2), 305–314.
- Cox, D. & Stark, O.(1995), An Exchange Implication of Transfers: The Demonstration Effect, in *Altruism and Beyond: An Economic Analysis of Transfers and Exchanges within Families and Groups*, eds. O. Sta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8–85.
- Dunn, T.(1994), *The Distribution of 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fers Across and Within Families*, *Mimeographed*.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 Gusio, L., T, Jappelli.(1991),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European Economic Review*, 35, 103–120.
- Hauser, R. & I. Fischer(1990). Economic Well–being among One–parent Families, in T. M. Smeeding, M. O'Higgins, and L. Rainwater eds., *Poverty, Inequali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rvester/ Whatscheaf*, 126–257.
- Kim, H. S.(2007),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Old–Age Security in Korea,"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anel Data Analyses: Employment and Quality of Life*, 387–393.
- Kim, J. K.(2007), "Married Women's Financial Support to Their Parents," *The Women's Studies*, 72(1), 247–265.
- Kim, J. K. & Song, E. K.(2006), "Factors Determining 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fer,"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13, 115–123.
- Kotlikoff, L. J. & Spivak, A.(1981), "The Family as an Incomplete Annuities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2), 372–391.
- Lee, G. R., Netzer, J. K., & Coward, R. T.(1994),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nd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Assis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559–565.
- Lee, Y., William, L. P. & Robert, J. W.(1994), "Sons, Daughters, and Intergenerational Support

- in Taiw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4), 1010-1041.
- Logan, J. R. & Glenna Spitze(1994), "Informal Support and the Use of Formal Services by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14(1), S25-S34.
- Lucas, R. E. & B., O. Stark(1985), "Motivations to Remit: Evidence from Botswan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901-918.
- McGarry, K. & Schoeni, R. F.(1995), "Transfers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84-226.
- _____ (1997), "Transfers Behavior within the Family: Results from the Asset and Health Dynamics Study,"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82-92.
- Menchik, P. L.(1980), "Primogeniture, Equal Sharing, and the United States Distribution of Weal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4(2), 299-316.
- Schoeni, R. F.(1997), "Private Interhousehold Transfers of Money and Time: New Empirical Evidenc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3(4), 423-448.
- Secondi, G.(1997), "Private Monetary Transfers in Rural China: Are Families Altruistic?,"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3(4), 487-511.
- Shi, Leiy(1993), "Family Financial and Household Support Exchange Between Generations: A Survey of Chinese Rural Elderly," *The Gerontologist*, 33(4), 468-480.
- Stollner, E. P.(1985), "Exchange in the Informal Support Networks of the Elderly: The Impact of the Reciprocity on Mor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5-342.
- Tomes, N.(1981), "The Family, Inherita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38-958.
- Wilhelm, M. O.(1996), "Bequest Behavior and the Effect of Heir's Earnings: Testing the Altruistic Model of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86(4), 874-892.